[별지 제9호서식] 청문통지서

청 문 통 지 서

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7조제1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소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1. 당사자</td><td colspan="4">성 명 (직위):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상 호 :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사업자등록번호 :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업체 주소 :</td></tr>
<tr><td>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</td><td colspan="4">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
(인증유형☑ : 업체별□ / 품목별□, 인증번호 :)</td></tr>
<tr><td rowspan="13">3. 처분의 법적근거</td><td colspan="3">관련 규정</td><td>해당 여부(√)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업체별</td><td colspan="2">- 제17조제10항(시정요구 불응)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- 제17조제11항</td><td></td></tr>
<tr><td>1.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</td><td></td></tr>
<tr><td>2.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</td><td></td></tr>
<tr><td>3.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품목별</td><td>4. 속임수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작성·발급한 경우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- 제18조제3항</td><td></td></tr>
<tr><td>1.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</td><td></td></tr>
<tr><td>2.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- 제18조제5항(시정요구 불응)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4. 청문실시</td><td>일 시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장 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담당부서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담당자(전화번호)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/table>

년 월 일

○ ○ 세 관 장 직인

※ 청문출석 대신 의견서 서면제출이 가능합니다.

※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'의견진술 포기서'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의견진술 포기서

인적사항	성　　명 (직위):
	상　　호 :
	사업자등록번호 :
	업체 주소 :

본인은 귀 세관의 청문 통지에 대한 출석 및 의견서 제출을 포기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성 명 :　　(서 명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